시 보

선	기관의 장
람	

all ways INCHEON

제1785호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2019년 11월 13일 수요일

공 고 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879호 공시송달 공고	고 시 ○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-358호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2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88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	공 고	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892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879호 공시송달 공고	13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895호 도시관리계획(구월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주민 공고·열람 ········· 18 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896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88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	15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896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	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892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	16
	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895호 도시관리계획(구월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주민 공고	.·열람 18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902호 도시계획시설(철도)사업 공사완료 공고	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896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19
	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902호 도시계획시설(철도)사업 공사완료 공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25





발행 : 인천광역시 편집 : 대변인실

고 시

인천광역시고시 제2019-358호

IHP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IHP 도시첨단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-196호, 2017. 8. 28.)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19. 11. 11.

인 천 광 역 시 장

IHP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
가. 산업단지 개요

- 1) 위치·면적 :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, 1,170,530.7㎡
- 2) 사업시행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
- 3) 관리기관 : 인천경제자유구역청(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)
- 4) 조성목적
 -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목표로 GM Proving Ground와 연계한 자동차 첨단부품, 소재 관련 R&D 중심의 외국인기업 투자유치
- 친 환경적인 Hi-Tech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산업 발전의 견인 역할 수행
- 5) 법적근거: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3조제1항
- 6) 추진경위
- 2003.08.11. :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(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-19호)
- 2011.08.01. :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

승인 고시(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1-155호)

☞ IHP(Incheon Hi-Tech Park)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

○ 2014.01.17. : IHP 관리기본계획 고시(제2014-17호)

○ 2014.07.29. : IHP 실시계획 승인 고시

○ 2014.12.08. : IHP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(제2014-250호)

○ 2016.11.14. : IHP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(제2016-277호)

○ 2017.08.28. : IHP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(제2017-196호)

7) 분양현황

(단위 : m², 2019. 10월기준)

	구 분	총면적	분 (적	조성	조성	
	ਜੋ ਦ	중인식	분양대상	분 양	미분양	기간	기관
	계	1,170,530.7	675,513.6	189,488.1	486,025.5		
	산업시설용지	645,080.6	645,080.6	170,929.1	474,151.5		
	자동차, IT(정보통신), (신)소재, 로봇	182,513.0	182,513.0	_	182,513.0	0011	한국
	IT(정보통신), (신)소재, 로봇	188,293.4	188,293.4	112,338.9	75,954.5	2011	토지 주택
	외국인투자	183,384.0	183,384.0	_	183,384.0	2019	공사
=	첨단산업집적센터	58,590.2	58,590.2	58,590.2	_		
-	장기임대산업단지	32,300.0	32,300.0	_	32,300.0		
	지원시설 용 지	23,154.0	23,154.0	15,295.0	7,859.0		
	공공시설용지	502,296.1	7,279.0	3,264.0	4,015.0		

8) 입주(유치)계획

(단위 : 용지·획지수)

			산업시설 용 지			
구 분	자동차, II(정보통신), (신)소재, 로봇	IT(정보통신), (신)소재, 로봇	외국인 투자	첨단산업 집적센터	장기임대 산업단지	계
계	15	25	2	4	2	48
2019.10. 기준	15	25	2	4	2	48

(단위 : m²)

						(/
		산	업시설 용 지			
구 분	자동차, II(정보통신), (신)소재, 로봇	IT(정보통신), (신)소재, 로봇	외국인 투자	첨단산업 집적센터	장기임대 산업단지	계
계	182,513.0	188,293.4	183,384.0	58,590.2	32,300.0	645,080.6
2019.10. 기준	182,513.0	188,293.4	183,384.0	58,590.2	32,300.0	645,080.6

나. 관리기본계획

1) 기본방향

가) 목 표

- GM 성능시험장과 연계한 자동차 첨단부품, 소재 관련 하이테크 파크 조성
- R&D 중심의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와 친환경 첨단산업 유치

나) 추진방향

- 인천광역시 특화 및 비교우위 업종인 첨단 자동차부품, 소재 관련 R&D 중심의 친환경적인 Hi-Tech 산업시설 조성
- 자동차부품, IT, (신)소재, 로봇 관련 업종의 R&D 및 산업시설, 첨단산업 집적센터, 장기임대 산업용지 조성
-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국내기업과 연구소가 연관된 기업을 유치하여 외국인투자 활성화 여건 마련

2) 산업단지 용도별구역 구분계획

가) 용도별 구역 면적

(단위 : m²)

총 면 적	산업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시설구역
1,170,530.7	645,080.6	23,154.0	208,479.1	293,817.0

※ 관리기관의 소관업무별 관리 담당부서

▷ 산업시설구역[IT(정보통신), 자동차, (신)소재, 로봇, 외국인투자, 첨단산업집적센터, 장기임대산업단지]

담당기관 및 부서	담당 업무
서비스산업유치과	기업유치
신성장산업유치과	/ 首
도시건축과	산업단지 관리 업무, 입주 설립(승인), 공장등록 및 사후관리
청라관리과	기반시설관리(쓰레기, 우.오수배관, 도로 등), 환경배출시설관리, 단속, 공원 및 녹지 관리, 건축행위 및 건축물 사후관리, 필지분할 및 공부 관리

※ 사업시행자(LH) : 토지분양, 임대 및 사후관리 담당

▷ 기타 구역[지원시설구역, 공공시설구역, 녹지시설구역] : 용도별 구역 소관업무 관리

≪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≫

(단위 : m²)

		산	업 시 설	구 역	
합 계	자동차, 『정보통신	IT(정보통신), (신)소재, 로봇	외국인	첨단산업	장기임대
	(신)소재, 로봇	(신)소재, 로봇	투자	집적센터	산업단지
645,080.6	182,513.0	188,293.4	183,384.0	58,590.2	32,300.0

나) 용지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

(1) 사어지서요지(그여)

(1)	산업시설용지	(구역)
위 치	용지별	허 용 용 도
F1 ①~⑧	자동차, IT(정보통신), (신)소재, 로봇	○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【건축법시행령 별표1】에 의한 다음의 용도 • 공장(도시형공장에 한함)
F3 ④~10	IT(정보통신), (신)소재, 로봇	 ・공동주택 중 기숙사(부수 용도에 한함) ・교육연구시설(연구소에 한함) ・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부수 용도에 한함) ○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
F2	외국인 투자	○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○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 ※ 유치업종: IT(정보통신),자동차,(신)소재,로봇 관련업종 및 R&D기업
LF ①~②	장기임대 산업단지	 ○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【건축법시행령 별표1】에 의한 다음의 용도 • 공장(도시형공장에 한함) • 공동주택 중 기숙사(부수 용도에 한함) • 교육연구시설(연구소에 한함) •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부수 용도에 한함) ○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○ 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○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 ※ 유치업종 : IT(정보통신),자동차,(신)소재,로봇 관련업종 및 R&D기업
F3 ①~③	첨단산업 집적센터	 ○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【건축법시행령 별표1】에 의한 다음의 용도 • 공장(도시형공장에 한함) • 제1종근린생활시설(연면적의 20%이하에 한함) • 교육연구시설(연구소에 한함) •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• 창고시설 • 운수시설(집배송시설에 한함) •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부수 용도에 한함) ○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○ 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○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형공장, 지식산업센터(입주지원시설 포함) • 기숙사,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한 지원시설 (단, 2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※ 유치업종: IT(정보통신),자동차,(신)소재,로봇 관련업종 및 R&D기업

(2) 기타 용지

○ 지원시설용지, 공공시설용지 등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며, 공공시설용지에는 신.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.

3) 업종별 배치계획

(단위 : m²)

3)	ㅂㅇㄹ 네						(\	!TI ·	111)
	-1 = -1	한국표준산업분류			계	2019	9.10월 기준	향후	계획
구분	업 종 별	(중분류)		획지수	면적	횏지	면적	획지수	면적
위치		합 계		48	645,080.6	48	645,080.6	-	-
	자동차	○ 기타 자동차 부품관련 IT 제조업	26 27 28 29						
	1011	○ 엔진용 부품 제조업 및 차체용 부품 제조업 ○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및 전기장치 제조업 ○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	30						
F1 ①~®	IT (정보통신)	○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○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2627	15	182,513.0	15	182,513.0	_	-
	(신)소재	○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○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○ 1차 금속 제조업 ○ 금속가공제품 제조업	22 23 24 25						
	로봇	○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						
	IT (정보통신)	○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○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26 27				188,293.4	-	
F3 4 ~10	(신)소재	○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○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○ 1차 금속 제조업 ○ 금속가공제품 제조업	22 23 24 25	25	188,293.4	25			-
	로봇	○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						
F1 F3	R&D 기업	○ 금속, 플라스틱 Mould Design, 다이/ 어셈블리 지그 설계 분야 ○ 공장 라인 설계 분야 및 디자인 전문 분야 ○ 성능 및 내구 관련 시험 전문 분야 및 설계 관련 엔지니어링기술 보유 분야 ○ 자동차 및 부품 해석(구조, 성능 등) 관련 분야 ○ 첨단 부품·소재기술 연구분야 및 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○ IT 및 전기, 전자 관련 분야 및 기타 정밀기계, 신소재, 메카트로닉스 관련 분야	70 71 72 73	-	-	-	-	-	-
F2	외국인 투자	상기 업종 전체	_	2	183,384.0	2	183,384.0	_	_
F3 ①~③	첨단산업 집적센터	상기 업종 전체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	_	4	58,590.2	4	58,590.0	-	_
LF ①~②	장기임대 산업단지	상기 업종 전체	-	2	32,300.0	2	32,300.0	-	_

[※] R&D기업은 IT(정보통신), 자동차, (신)소재, 로봇 업종이 포함되어 있음.

4) 입주 관리계획

가) 입주대상 업종

○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단지관리지침」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의 업종

【 유치업종 분류 】

구분		유 치 업 종	한국표준 산업분류	비고
	IT (정보통신)	○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○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26 27	
		○ 기타 자동차 부품관련 IT 제조업	26, 27 28, 29	
	자동차	○ 엔진용 부품 제조업 및 차체용 부품 제조업○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및 전기장치 제조업○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	30	
F1 ~ F3	(신)소재	○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○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○ 1차 금속 제조업 ○ 금속가공제품 제조업	22 23 24 25	*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, 권장 용도를 준수하여 야함.
ГЭ	로봇	○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	*2017.01.13.
	R&D 기업	 금속, 플라스틱 Mould Design, 다이/어셈블리 지그 설계 분야 공장라인 설계분야 및 디자인 전문 분야 성능 및 내구 관련 시험 전문 분야 및 설계 관련 엔지니어링기술 보유 분야 자동차 및 부품 해석(구조, 성능 등) 관련 분야 첨단 부품·소재기술 연구분야 및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IT 및 전기, 전자 관련 분야 및 기타 정밀기계, 신소재, 메카트로닉스 관련 분야 	70 71 72 73	한국표준산업 분류 10차 개정에 따라 업종코드 변경
LF	장기임대 산업단지	○ 상기유치업종 포함	-	

[※] 단,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.

^{※「}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상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한 업종은 입주 가능함.

나) 입주자격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같은 법 제38조(입주계약 등)에 의거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및 기관
 -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
- 장기임대산업단지는 「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」 및 「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. 운용에 관한 지침」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, 해외유턴기업 및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음.
-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.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

다) 입주제한

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

라) 입주대상기업 선정방법

-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입 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의 입주심사기준에 의거 입주기업을 심사
 - 사업시행자는 입주심사를 통과한 기업체에 대하여 관리기관에 입주계약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대상기업을 최종 선정
 - * 단,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대상기업 선정 방법은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함.

【입주심사기준】

- ▶ 입주심의위원회 입주기업 평가 기준
 - 기업현황 평가 : 기업규모, 상장 여부, 기업 재무상태 등
 - 기술능력 평가: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, ISO 등 국제 표준 인증 현황 등
 - 사업계획서 평가 : 투자규모,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
 - 기타 : 수상경력 보유 우수업체 가점
 - * 입주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, 입주기업 평가 세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함.

5)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가) 지원시설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

용지별	위 치	허용용도
	GC1 ~ GC2	○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【건축법시행령 별표1】에 의한 다음의 용도
지원시설	GC4	 기타시설(방송통신시설) ○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【건축법시행령 별표1】에 의한 다음의 용도 ・제1종근린생활시설 ・제2종근린생활시설(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) ・문화 및 집회시설 ・판매시설 ・의료시설(정신병원 및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 ・교육연구시설 ・노유자시설 ・운동시설(운동장 제외) ・업무시설 ・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, 액화가스 충전소에 한함) ・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, 세차장에 한함) ・기타시설(방송통신시설)

용지별	위 치	허용용도
지원시설	GC5	 ○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【건축법시행령 별표1】에 의한 다음의 용도 •제1종근린생활시설 •제2종근린생활시설(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) •문화 및 집회시설 •판매시설 •의료시설(정신병원 및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 •교육연구시설 •노유자시설 •운동시설(운동장 제외) •업무시설 •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, 액화가스 충전소에 한함) •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, 세차장에 한함) •기타시설(방송통신시설) * 권장용도: ○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【건축법시행령 별표1】에 의한 다음의 용도 •자동차관련시설(정비공장에 한함) •창고시설

나) 지원시설 배치 계획

○ 지원시설 배치

○ 시원시실 배시 (단위 :							
л Н	위 치	계		2019.10월 기준		향후 계획	
구 분	H 1	획지수	면적	획지수	면적	획지수	면적
합 계		18	23,154	18	23,154		
지원시설	GC1 ①~②	6	6,088	6	6,088		
	GC2 ①~④	10	15,295	10	15,295		
	GC4	1	1,181	1	1,181		
	GC5	1	590	1	590		

다) 지원시설 입주자격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,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자 중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
 -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 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
 -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.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

6)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가) 환경관리

-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, 대기오염, 소음.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.
-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

나) 안전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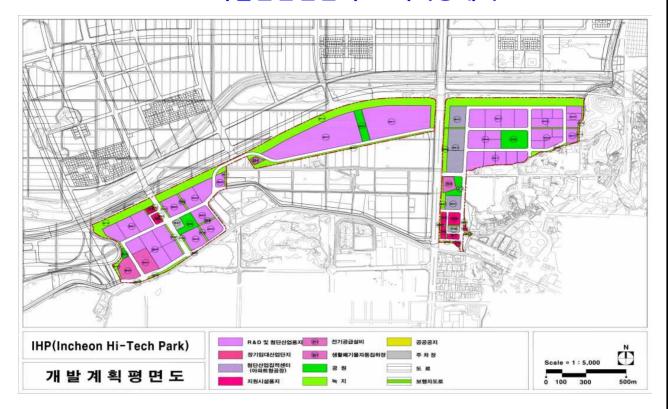
○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,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

다) 기 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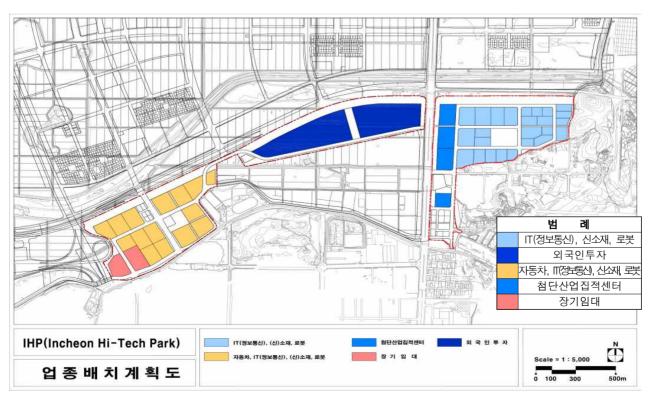
○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「산업단지관리지침」, IHP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.

붙임: 산업단지 계획도

IHP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



IHP 도시첨단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도



공 고

인천광역시 공고 제2019-1879호

공시송달공고

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차량을 공매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공매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. 11. 11.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제 목 : 압류자동차 공매통지(제2019-1823호)

2. 공고기간 : 2019년 11월 11일 ~ 2019년 11월 27일까지

3. 공시송달 내용

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,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※문의처 :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자동차공매 담당 주무관 박은영(☎ 032-440-8445)

공시송달 대상자

연번	성 명	주 소	공매물건	반송사유	비고
1	서*곤	인천광역시 부평구 **동 38번지 82호 오페라하우스 **4호	05보7587	주소불명	
2	하*캐피탈(주)	서울특별시 강*구 테헤란로 127 , **층 (역삼동, **금융그룹 **사옥)	18러 1615	이사불명	
3	송*훈	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*3번지 삼*빌딩 **8	01구2145	수취인불명	
4	세*자산관리(주)	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*번지*0호 창*빌딩 *층	01구2145	수취인불명	
5	최*준	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로 *0 , 5동 1*1호 (삼산동, ** 빌라)	59모7908	이사불명	
6	방*주	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**4 , 6*1호(부개동, **APT)	48오1514	주소불명	
7	(주)신*건설	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*6 , 로뎀빌딩 3*1호(**동)	54구9986	이사불명	
8	성*조경(주)	인천광역시 중구 **로27번길 56 (**1가)	55너4738	수취인불명	
9	(주)자*건설	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**번길 2 ,*층(일신동)	33노4099	수취인불명	
10	(주)에스**종합건설	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*0번길 1*1, *층 (**동,광*빌딩)	30서1105	이사불명	
11	안*준	인천광역시 남동구 ***로69번길 24-10, **1호 (**동)	02노1321	수취인불명	
12	환*개발(주)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**로325번길 22,**빌딩 4층 (**동)	인천82다 7247	수취인불명	
13	바*무역 주식회사	인천광역시 서구 **로 **-25 (**동,*** 수출단지)	64저3332	수취인불명	
14	(주) 오*누리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***로 *6, **빌딩 *층 (**동)	02무6349	이사불명	
15	중*공운(주)	인천광역시 부평구 **동 2*4번지 6*호 (**동)	02013381	수취인불명	
16	이*협	경기도 **시 **로227번길 1*3 (**면)	45도7066	수취인불명	

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888호

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

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19. 11. 12.

인 천 광 역 시 장

□ 변경등록 사항 : 사무소 소재지 변경

○ 단체명 : 유기동물사랑나누기, 떠돌이 개와 길냥이

등록번호	단체명	변 경 (소지	사 항 배지)	변경 	주관과	
(등록연월일)		변경 전	변경 후	사유		
제2011-0-인천 광역시-29호 (2011.7.7.)	유기동물사랑나누기	남동구 호구포로 763, 2층	남동구 수인로 3545, 2층	사무소		
제2013-0-인천 광역시-33호 (2013.12.12.)	떠돌이 개와 길냥이	중구 우현로 60	중구 참외전로72번길 6-4	소재지 변경	농축산유통과	

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892호

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
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「2019년도 제9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」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> 2019년 1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

가. 심의일시 : 2019. 11. 06.(수) 14:00

나. 심의장소 : 미추홀타워 15층 회의실

다. 심의작품 : 총 14작품

라. 심의결과 : 가결 : 13작품/ 부결 : 1작품

마. 작품별 심의결과 : 별첨

바.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(☎ 032-440-399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〈별첨〉

	2019년도 제9차 건축물미술작품 심의결과								
연번	위치 및 건물명	종류	작품명		결과 부결	사 유			
1	미추홀구 숭의동 33-236번지	조각	売_休	О		[권고] 명패 매입			
2	남동구 논현동 640-1번지	조각	Tree of Hope (희망의 나무)	О		[권고] 돌출부분 최대한 안전성 유지			
3	중구 운서동 3098-5(B13-1BL)	회화	Allotropism (同質異形)1	О		〔권고〕 작품손상방지용 액자 설치			
4	66	회화	Allotropism (同質異形)2	О		"			
5	"	회화	Allotropism (同質異形)3	О		"			
6	"	회화	빛-두물머리	0		〔권고〕액자 설치			
7	"	회화	빛-주왕산	0		"			
8	66	회화	빛-백두산	0		ш			
9	ш	회화	사유의 흔적1	0		"			
10	и	회화	사유의 흔적2	0		ш			
11	и	회화	사유의 흔적3	0		и			
12	미추홀구 학익동 401-21	조각	즐거운인생 (JoyfulLife)	0		(권고) 우레탄 도장 위에 투명 코팅 실 시			
13	미추홀구 숭의동 462번지외 2필지	조각	생성 -natural space	О		〔권고〕명패 매입			
14	계양구 작전동 679-2	조각	Memory		0	·예술성 부족, 주변과 부조화			

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895호

도시관리계획(구월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주민 공고·열람

도시관리계획(구월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11. 13.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주요내용

- O (구역명) 구월 지구단위계획구역
- O (위치)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490번지, 남동구 구월동 1350번지 일원
- O 지구단위계획 주요변경내용
 - 도시계획시설(시장) 폐지
 - (위치) 남동구 구월동 1446번지 일원 (면적) 60,809.87 m²
 - (사유)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시장) 폐지
 -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적지 특별계획구역 지정
 - (위치) 남동구 구월동 1446번지 일원 (면적) 60,872.3㎡
 - 오기사항(누락 조서 작성 등) 정정 등

2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- O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O 의견제출: 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열람장소

- 인천광역시청(도시균형계획과, 032-440-4632), 미추홀구(도시계획과, 032-880-4488), 남동구(도시관리과, 032-453-2952)
- 4. 관계도서: 생략(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). 끝.

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896호

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

「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공익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참여 감정평가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.

2019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장

- □ 공고기간 : 2019. 11. 12.(화) ~ 2019. 11. 18.(월)
- □ 공고내용

가. 참여사업

연 번	사 업 명	규 모	추 정 감정가액	발주부서	선정수
1	「공유재산매각」을 위한 매 각가 산정	○위치:연수구 송도동 396-1 외 2필지 ○감정평가대상:토지 3필지	7,777억원	경제자유구역청	2개업자
2	「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」 사용료 산정	○위치:남동구 남촌동 177-1 일원 ○감정평가대상:토지 및 건물	3,937억원	구월농축산물도매 시장만나무소	1개업자
3	「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정 비사업」보상액 산정	○위치:미추홀구 숭의동 109-119 일원 ○감정평가대상:토지, 건물, 영업권	250억원	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시업조합	1개업자

- ※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참여사업 규모에 대한 변경(취소 등 포함)이 발생될 수 있음.
- ※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 심사일 기준 토지소유자 등 추천에 따른 해당사업 참여 감정평가업자는 선정 시 제외
- 「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」: 대화, 글로벌, 미래새한

나. 신청자격

- ①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
- ② 「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
- ③ 공고일 현재 인천지역 소재 감정평가업자(주·분사무소 포함)
- ④ 소속 감정평가사 수 : 공고일 현재 3인 이상(심사자포함 자격취득 이후 평가 실무경력 1년 이상 감정평가사)
- 다. 신청기간 : 2019. 11. 12. ~ 2019. 11. 18.(18:00)
- 라. 신청장소 :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(시청 내 IDC 1층)

마. 제출서류

- ① 감정평가 참여신청서(서식 1)
- ② 법인등기·인가증(공고일 기준 발급), 사업자등록증, 법인 설립인가서
- ③ 업무제안서(서식 2)
- ④ 업무제안서의 '수행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' 참고
 - (주의사항)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계획 작성 시해당 감정평가업자(감정평가사 이름 포함)를 표시하거나, 식별할 수있는 글자, 기호, 표식, 문양 등 일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(기재 시 선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 - **(업무실적)** 대상사업 1회 이상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 감정평가사협회 에서 발행한 감정평가 업무실적 보고 확인서 제출(*목록은 별도 제출)
 - ※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(공공기관 포함), 지방자치단체(지방공기업 포함)가 시행한 사업임.

□ 기타 유의사항

가. 감정평가업자 선정 : 「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」심의 선정(발주부서 개별통지)

- 나. 책임 감정평가사는 「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」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함.
- 다. 업무제안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
 - 사후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 계획 작성 시 주의사항 준용
 - 감정평가 수행계획서 및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계획은 구분하여 각 2매 이내 구체적 작성
- 라. 업무제안서 내용 및 제출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·형사상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.
- 마.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(부도 등)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순위 자가 선정업자로 결정
- 바. 참여 신청접수(우편물 접수포함)는 2019. 11. 18.(월) 18:00까지 인천 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접수 분에 한하여 유효함.
- 사.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임.
- 아.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아래 발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「공유재산매각」: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(☎453-7142)
 - 「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」: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(☎440-6972)
 - 「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」: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시업조합(☎773-0709)
- 자.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부동산평가팀(☎440-4597)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[ス	스	1	1

감정평가업자 참여 신청서

□ 참 여	사	업	:
-------	---	---	---

\Box	감정평가업자	
	4387F44F	•

구	분	내	8	刊	고
감정평가	업자				
주	소				
대 표	자				
감정평가	사 수				
전 화 /	FAX				
설 립	일				
7]	타	※ 해당사업 기 참여	등 제외 해당 내역 기재		

※ 상기 법인은 「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성실과 신의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"참여 신청서"를 제출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 감정평가법인(인)

인천광역시장 귀하

[서식 2]

업 무 제 안 서

□ 참여사업:

감정평가업자			사무소 소재지				
	개인						
	법인	주사무소					
감정평가사 수 (명)	H 년	분사무소					
	0 소속	감정평가사	현황(협회: 박	법인소속확인서)			
	○ 참여	감정평가사	평균 실무경	력(<u>협회: 경력증명서</u>)			
	○ 평가	○ 평가실적 : 공고일 이전 최근 3년 간 1건당 100억 원 이상					
	감정평가금액 및 증빙자료(작성 예시 참조)						
수행능력 등	* 협회: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대체 가능						
	○ 보험	○ 보험 등 가입여부(협회: 공제사업가입증명서, 보증보험증권 등)					
	○ 행정처분(과태료,과징금,주의,경고 등) 및 소속 감정평가사 징계여부						
	: 공고일 이전 최근 2년간(협회: 징계유무확인서 등)						
	○ 사후	○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등 : 별지 2장 이내로 구체적 작성					
】 감정평가	○ 참여	사업에 대한	평가계획, 픽	경가일정 등 : 별지 2장 이내 구체적			
수행계획	작성						
기타 의견	※ 해당시	업 기 참여 등	- 제외 해당 니	개역 기재			

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이 작성하였으며,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ㆍ형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○ ○ 감정평가법인(인)

※ 본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

평가실적 (최근 3년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감정평가금액)

연번	사	업	명	발주부서	감정평가서 제 출 일	감정평가금액	刊	고
총계							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
- ※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(공공기관 포함), 지방자치단체(지방공기업 포함)가 시행한 사업임.
- ※ 평가실적 합계는 상단 총계 란에 반드시 기재

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(자격취득 이후)

연번	성 명	ા તાલુક	자격취득일	감정평가 실무경력			7
		갱선결함		근무기관	기 간(년 월		고
					~ (년 월	!)	
1					~ (년 월	!) 소계	년 월
					~ (년월	<u>l)</u>	
					~ (년월	<u>!</u>)	
2					~ (년월	<u>!</u>) 소계	년 월
					~ (년월	<u>!</u>)	
3					~ (년월	!)	
					~ (년월	<u>!</u>) 소계	년 월
					~ (년월	<u>!</u>)	
계	평균 실무경력 : 년 월						

※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전원을 기재하며, **평균 실무경력은 *자격취득일 이후 참여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**을 합한 후 총 참여 감정평가사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.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-1902호

도시계획시설(철도)사업 공사완료 공고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(철도:인천도시철도1호선) 사업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.

2019. 11. 13.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○ 박촌역 외 4개소 : 인천 계양구 장제로 992 일원 외 4개소(경인교대 입구역, 동수역, 부평삼거리역, 인천시청)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○ 종류: 도시계획시설(철도)

○ 명칭: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외부E/S 설치공사

3. 사업의 면적 및 규모

역명	위치	규모(폭×연장×높이)
박촌역	1번 출입구	3.8m×42.8m×12.3m(상하행 각1대)
경인교대입구역	2번 출입구	3.3m×34.8m×14.2m(상하행 각1대)
동수역	1번 출입구	3.3m×23.2m× 7.7m(상하행 각1대)
부평삼거리역	4번 출입구	3.3m×35.7m×12.3m(상하행 각1대)
인천시청역	4번 출입구	3.0m×32.6m×12.7m(상하행 각1대)

4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○ 성명: 인천교통공사장

○ 주소: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

5. 사업기간

○ 실시계획인가일 ~ 2019.10.15